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72
----------	-------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김현정 · 박지원 · 이용선
박정현 · 남인순 · 김문수
김남근 · 박홍배 · 이수진
양부남 · 황명선 · 이광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가 결정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감면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보다 실효적인 공공재정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등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 ----- ----- ----- ----- ----- . 다만,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